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서

2023년 6월 30일

위탁자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수탁자 1 :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

수탁자 2 : 리카온손해사정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서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하며, 특수피해물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다)와 히어로손해사정주식회사(이하 "수탁자1"이라 하며, "수탁자2"에 대한 관리 및 "위탁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수행자"이다)는 _____ 리카온손해사정 _____ 이하 "수탁자2"라 하며, 특수피해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다) "수탁자1"과 수탁자2" 를 통칭하여 "수탁자"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를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특수피해물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고 특수피해물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말한다.
- ②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계약에서 고객에 대하여 위탁자의 책임을 구체화 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 ③ "고객"이라 함은 위탁자의 보험가입자(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및 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 ④ "특수피해물"이라 함은 보험목적이 전기, 통신, 교통시설물, 수입이륜차 등

피해물의 특성상, 해당 피해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피해물을 말하며, 나열한 예시에 한정되지 아니 한다.

⑤ "손해사정업무"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고조사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포함 한다.

가.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및 원인의 조사

나. 보험목적의 현황 조사

다. 보험목적의 손해상황 조사

라. 보험목적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마.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 여부 검토

바.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

사. 상기 가. 목 내지 바. 목에 대한 손해사정 보고서의 제출

제3조 【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로 하며, 본 계약서의 당사자 모두가 기명날인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 부터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업무위탁 및 절차】

"위탁자"는 고객이 보험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탁자1"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1"은 전신주, 가드레일 등 특수피해물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서면 또는 유선 등 전자방식을 포함하여 위탁자의 동의 받은 후

"수탁자2"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단, "위탁자"의 신속한 사고처리 및 손해확대 방지를 위해 전신주, 가드레일 등 특수피해물에 대해서 "수탁자2"에게 선 위탁 후, "위탁자"에게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위탁자의 의무】

"위탁자"는 제6조 1항에 따라 청구된 손해사정보고서 및 손해사정수수료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수탁자2"에게 손해사정수수료가 지체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1의 의무】

- ① "수탁자1"은 "수탁자2"가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신속히 검토 후, 미비한 점이나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신속히 보험금과 손해사정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1"은 "위탁자"가 정하는 선정·평가항목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수탁자2"에 위탁하는 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의 연장 또는 계약의 해지를 통해 업체들의 업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2의 의무】

- ① "수탁자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업무 수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완료하고,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수탁자1"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2"는 "수탁자1"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② "수탁자2"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민원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2"는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1"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또는 "수탁자2"가 직접 생성한 일체의 자료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기록·관리·보존 하여야 하며, "수탁자1"로부터 해당 자료의 열람, 복사 및 반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른다.
- ④ "수탁자2"는 수탁업무의 처리 및 제2항에서 정한 자료의 기록·관리·보존을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1"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1"은 "수탁자2"에게 관리지침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수탁자2"는 수탁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임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방법 및 기타 "수탁자1"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수의 지급방식 및 시기】

- ① "수탁자2"는 "위탁자"에게 위탁업무가 완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수탁자1"은 청구내역의 오류 등을 확인하여 "위탁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위탁자"는 "수탁자2" 명의의 계좌에 지급 한다
- ② 제1항의 보수의 산정은 별첨 손해사정 수수료 조건표에 따르며, 해당 수수료

조건표에 없는 사항은 양 당사자가 상호 서면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 ①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계약은 서면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된다.
 - 가. 본 계약의 협조 내지 준수사항, 의무이행 등을 현저히 태만히 하여 상대방의 업무 수행 또는 그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나.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다. 그 주요재산에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거나, 그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또는 파산, 부도처리, 회사정리절차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라.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마.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바. 일방이 제9조의 기밀 준수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사. 수탁자의 임직원 중 손해사정업무 담당자의 1/3 이상이 일신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사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그 이전에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면책】

-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본 계약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함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개정, 폐지, 행정관청의 처분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의미한다.
- ③ 제2항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기밀 준수 및 고객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

- ①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존재 및 내용,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비밀, 상대방 소유의 재산(상호, 상표 및 저작물)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각 당사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한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와 이에 준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②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그들의 사용인, 대리인, 법률 및 회계자문에게 위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의 양 당사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받은 정보, 자료, 문서 중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을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다. 본 조는 본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신의성실의 원칙】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한다.

제14조 【선정기준 및 평가】

“수탁자1”은 “수탁자2”에 대하여 (붙임2) 세부평가 항목 기준에 따라 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추후 업무 의뢰 비율에 반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1”은 위탁자에게 세부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고객 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증보험】

“위탁자”는 “수탁자2”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 있는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탁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5백만원(W5,000,000)의 손해배상 보장 예탁증서를 “수탁자2”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 제출 요구 및 실사】

-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제출된 자료 및 소명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사업장에 대한 직접 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한 “위탁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8조 【서면통지 등의 주소】

본 계약상의 모든 통지, 보고 등은 서면에 의하며, 상대방에게 다음의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상의 통지는 인편으로 교부될 경우에는 그 교부일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전자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전자메일에 대한 적절한 확인이 있는 경우 발송한 때에 각 수령된 것으로 본다.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앞

주 소 : 서울 중구 소월로 3(남창동,롯데손해보험빌딩)

자동차보상관리팀

전화번호 : 1588-3344

전자메일 :

담당자 :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 앞

주 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9층

자동차보상지원팀

전화번호 : 1833-2221

전자메일 :

담당자 :

제19조 【계약의 해석 등】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수탁자는 본 계약내용의 이행이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행됨을 보증한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 첨 : 손해사정 수수료 조건표 1부

세부평가항목기준 1부.

상기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 부를 작성하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자 1 부씩 보관한다.

관리팀 1692288 2023-09-29 14:49:26

2023 년 월 일

“위탁자”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월로 3(남창동,롯데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이 은 호 (인)



“수탁자1” :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9층

대표이사 이 은 (인)



“수탁자2” : 리카온손해사정

서울 금천구 가산동 호서대 벤처타워 807호

대표자 : 유 상 헌 (인)



관리팀 1692288 2023-09-29

수수료 조건표

항 목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비고
자전거 및 이륜차 원동 기 장치 장착 기계류	300만원 이하	고정	170,000	손해사정액 1.직접손해액기준 (간접손해 제외) 2.과실상계전금액
	3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고정	250,000	
	5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고정	350,000	
	1,0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	고정	500,000	
	2,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3.74%		
	3,000만원 초과		별도협의	
특수피해물 (특장 및 화 물 자동차 포 함)	300만원이하	고정	300,000	
	300만원초과~600만원이하	고정	400,000	
	6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고정	500,000	
	1,0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	5.06%	1,012,000	
	2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4.18%	1,254,000	
	3,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3.74%	1,870,000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2.88%	2,820,000	
	1억원 초과	2.20%	별도협의	
소견서 제출 : 제품정보 및 시세, 복원 예상비용, 기간 등에 대한 소견 제시 (최하 100,000원~ 최고 300,000원내 별도협의)				

- ◆ 1. 자전거, 특수피해물 수수료 지급 기준은 손해사정액 기준으로 산정
- 2. 위장사고 적발건은 금액 및 난이도 감안 별도 협의 후 지급한다.
- ◆ 교통비
 - 1. 업무용 승용차 : 유류대 및 통행료 (네이버지도기준 왕복 실비)
 - 2. 항공:이코노미 철도: ktx,srt일반실 선박:일반실 버스및기타교통수단:실비
 - 3. 위탁 손해사정 법인의 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은 일비만 지급
- ◆ 일비(식비포함) : 30,000원
- ◆ 숙박비(1일당) : 50,000원(1일기준 출장편도 200km이상시)

위탁 손해사정업체 세부 평가 항목

구분	배점	평가방법
초동조사 신속도	20	초동조사 및 손해조사 등 사고조사 신속도에 대한 평가
진행사항 중간보고	15	수입 후, 피해자 및 의뢰인에게 업무 진행사항 등 고객서비스에 대한 평가
손해사정 전문성	25	피해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
보고서품질	20	손해액 산정 근거, 입증자료 등 보고서 완성도에 대한 평가
고객서비스	20	민원 및 분쟁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능력
VOC불만	감점	유선불만, VOC불만접수, 대외민원 접수

1. 초동조사 신속도

- Survey 의뢰 건 처리과정에 대한 신속도 및 협조도 평가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2. 진행사항 중간 보고

- 예상 손해액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신속 및 정확도 평가

3. 손해사정 전문성

- 피해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

4. 보고서 품질

- Survey 보고서 품질 평가
- 손해사정근거 및 입증자료 충실도 평가
- 손해사정서의 중요한 내용 고지 여부.

5. 고객서비스

- 민원 및 분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능력

6. VOC불만(감점)

- 유선 불만, VOC불만 접수, 대외민원 접수

※ 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 또는 조정 될수 있음.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보" 라 하며, 특수피해물에 대하여 보험금을 부담하는 위탁사 이다)와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히어로손사"라 하며, 수탁사에 대한 관리 및 업무를 지원하는 "수행자"이다)

_____ (이하 "수탁사"라 하며)는 20 ____년 ____월 ____일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이하 "본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위탁계약은 "위탁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사"에게 위탁하고, "수탁사"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사"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본 계약,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사"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및 원인의 조사
- 보험목적의 현황조사
- 보험목적의 손해상황 조사
- 보험목적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 5.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 여부 검토
- 6. 상기 1호 내지 5호에 대한 손해사정보고서의 제출

제4조 (재위탁 제한)

- ① "수탁사"는 "위탁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사"와의 본 위탁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 ② "수탁사"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사"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사"는 본 위탁계약 기간은 물론 본 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수탁사"는 본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 ① "위탁사"는 "수탁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탁사"는 "수탁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위탁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사"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사"는 "수탁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수탁사" 또는 "수탁사"의 임직원 기타 "수탁사"의 수탁자가 본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사" 또는 "수탁사"의 임직원 기타 "수탁사"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사"는 이를 "수탁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위탁사"와 "수탁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당사자 "위탁사"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월로 3 (남창동,롯데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이 은 호 (인)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9 층
대표이사 이 은 (인)

당사자 "수탁사" : **106-86-30223**
리카온과제대상 유상현 
자동차손해사정(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
호서대벤처타워 807호
서비스 손해사정



저희 **우리은행**은 커진 만큼 큰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리카운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 (주) 님

계좌번호 **016-285800-13-101**

예금과목 **기업자유예금(우리뱅크통장)**

실명확인필04-08-05(이월-0)



대한민국정부
인 지 세
100원
납대문서무서장
17년음은 2012년 06월 28일



인감사용

신계좌번호 **1005-500-014287**

신고객번호 **025093119**

내좌관리점 **가산벤처지점**

개입일자 **2004-08-05**

전화 **02- 839-9176**

충청지방점 **동차동지점**

발행일자 **2012-06-28**

전화 **02- 754-4491**

(이 통장은 본 도장을 함하여 12년음은...)

중요증서 (1037)

계좌카드 E카드 인터넷 PC뱅킹 자동이체 인감카드
N Y N Y 76 0

통장일련번호 **166**

약관적용 안내

▶ 이 통장의 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신탁거래약관 및 해당 예금 개별약관을 적용하며, 우리 은행에 비치된 약관내용을 열람 또는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 가계무대적금 등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은 대출을 받거나 차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종금상장 금액에 대하여 해당일수 만일 특별금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될 경우 예금이 부정 인출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 통장 인감, 현금카드, IC카드, 신용카드 등을 분실시는 바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 신고된 서명면으로 예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예금주가 본인의 주민등록증류주사행셔야 합니다.

통장, 현금카드, IC카드 분실신고 : 1599-5000, *588-5000
신용(BC) 체크카드 분실신고 : 1588-9055

텔레뱅킹/고객상담 : ☎ 1599-5000, 1588-5000(해외에서 이용시 82-2-2006-5000)

「고객의 소리」접수 : ☎ 080-365-5000(핸드폰이용시 ☎ 02-2008-5000)





사업자등록증

(면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06-86-30223

법인명 (단체명) :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 (주)
대표자 : 유상헌

개업연월일 : 2004년 09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3054155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806, 807호(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806, 807호(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손해사정



발급사유 : 정정

이메일주소: 7579551@reca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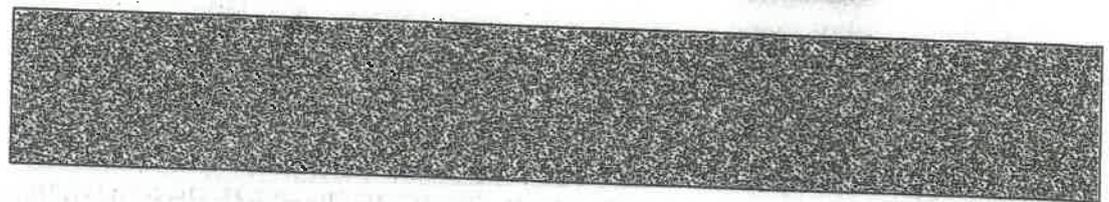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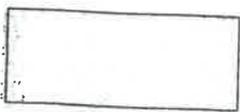
김영라 TEL 02-757-9551

최민영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7년 08월 02일

금천세무서장



제 B0000167 호

손해사정업등록증

상 호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
대 표 자 유상헌
주민등록번호 630426-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1로 70
806, 807호(가산동 대벤처타워)
영 위 종 목 1종 3종대물 3종대물
인 격 인
최초등록일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7월 26



금융감독원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등록번호 : B0000167 , 대표자 : 유상현)



일 금 : ₩5,000,000
종 류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 : 2019.08.05
~ 2023.06.30

위 금액을 보험업법 제19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의2 제2항 및 제9-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을
위하여 예탁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금융감독원



원본대조필

원본대조필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제 100-000-2023 0253 4149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106-86-30223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유상현	피보험자	116-82-14464 금융감독원
보험가입금액	금 五百萬 원整 ₩5,000,000-	보험료	₩15,000-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1,096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손해사정업(보험계리업) 등록보증금 보증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행정행위내용] 인허가종류 손해사정업(보험계리업) 등록 인허가조건 보험업법 제191조 인허가기간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806호 807호 (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인허가번호 인허가보증금액 ₩5,000,000-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본 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증권 발급	대리점	대리점명	화신
		모집자 고유번호	유우신 20021074100007 (02-2633-0092)
	지점	구로디지털지점	02-846-002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10층 (구로동, 지밸리비즈플라자)	

2023년 06월 13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장

유상현



대한민국 정부 인지도 200원
증로세 무서장
인쇄 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ISO 37301
ISO 37001

준법경영시스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한국경영인협회 인증기업

보험증권

업무배상책임보험

계약번호 : 82300025026000

계약자 (주)리카온손해사정
 (0859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피보험자 (주)리카온손해사정
 보험기간 2023.01.08 24:00부터
 2024.01.08 24:00까지
 첫회보험료 2,744,000 원 (1회/일시납)

계약자번호 106-86-30223
 피보험자번호 106-86-30223
 청약일 2022.12.28
 총보험료 2,744,000 원

가입내역

목적물	목적물명	전문인배상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806,807호 (가산동,호서대벤처타워)		
	매출액	903,064,913	소급담보일자	2014-01-08
	가입업무	손해사정	종업원수	13
	전문직종사자수	15	담보지역코드	대한민국
	재판관할법원명	대한민국	통지연장기간구분코드	없음
	손해발생구분코드	없음		

보장조건	화폐	보장/공제금액	보험료
손해사정사 특별약관 (ProfessionalIndemnity 사고당 보상한도)	KRW	300,000,000	2,744,000
손해사정사 특별약관 (ProfessionalIndemnity 총보상한도)	KRW	300,000,000	
손해사정사 특별약관 (사고당 공제금액(%))	KRW	0.00	
손해사정사 특별약관 (사고당 공제금액)	KRW	1천만	
보험료합계			2,744,000 원

기타사항

전문직종구분코드	손해사정사	갱신계약여부	예
전계약번호	82210077298000	정산대상코드	아니오
납입주기	일시납	다른보험가입여부	아니오
단체계약유형코드	1종단체(급여단체)	연간구간구분	연간계약
단체(성)보험계약여부	아니오	피보험자관계	본인
별첨서류여부	아니오	최초공시여부	아니오
변경공시여부	아니오		

우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보험증권은 2022년12월28일 수도권법인4지점에서 발급하였습니다.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洪元學**
 사 장



삼성화재

대한민국정부
 인지세:100원
 서초세무서장
 후 납윤인
 2016년 34017호

삼성화재 수도권법인4지점보험대리점 주식회사 삼성화재모닝인슈 [협회등록번호: 20120161090001]

Tel : 02-389-7291/010-4331-3372
 mail : cjh7290@samsungfire.com

보험증권

업무배상책임보험

계약번호 : 82300025026000

계약자 (주)리카온손해사정
(0859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피보험자 (주)리카온손해사정
보험기간 2023.01.08 24:00부터
2024.01.08 24:00까지
첫회보험료 2,744,000 원 (1회 /일시납)

계약자번호 106-86-30223
피보험자번호 106-86-30223
청약일 2022.12.28
총보험료 2,744,000 원

④ 사용된약관

-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손해사정사 특별약관
-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 *정보기술 추가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추가약관)
- *제재위반 보상제외 특별약관
- *감염병 부담보 특별약관 (LMA 5399)

⑤ 계약관련자

계약관련자	계약관련자번호	계약관련자명
피보험자	106-86-30223	(주)리카온손해사정

- ※ 보험증권은 계약체결의 증거로 발행되는 것이며, 실제 계약내용은 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본 보험증권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회사 소정의 납입영수증이 발급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우회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보험증권은 2022년12월28일 수도권법인4지점에서 발급하였습니다.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홍 원 수
사 장



삼성화재

대한민국정부
인자세100원
서초사무서장
후 납 승인
2016년 34017호

삼성화재 수도권법인4지점보험대리점 주식회사 삼성화재모닝인슈 [협회등록번호: 20120161090001]

Tel : 02-389-7291/010-4331-3372
mail : cjh7290@samsungfire.com